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874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인천국제공항공사
피고, 항소인	인천광역시 중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51406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4. 19.
판 결 선 고	2018. 5. 3.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제1심에서,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다가,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4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, 7면 13행의 "배제한다'는"을 "배제한다'고"로, 7면 마지막 행의 "제104조"를 "제106조 제1항"으로, 13면 2행의 "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."를 "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."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처분일	과세대상	재산세(원)	지방교육세(원)
2013. 9. 24.	2851-18 외 2,624건 (면적: 45,258,099.2㎡)	6,020,215,216	1,193,988,314
2014. 9. 11.	1083-20 외 2,651건 (면적: 48,725,419.35㎡)	6,809,218,653	1,354,757,089
2015. 9. 24.	산553 외 2,675건 (면적: 48,736,569.1㎡)	7,356,360,531	1,463,567,247
2016. 9. 28.	1961 외 2,673건 (면적: 48,816,712.9㎡)	7,875,580,849	1,547,075,128

2. 결론

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(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취하되었으므로, 이에 대한 제1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3

[별지]

[표1] 재산세 부과처분

(단위: 원)

처분일자	부과처분	정당세액	취소청구세액
2013. 9. 24.	6,020,215,216	5,772,539,793	**247,675,423**
2014. 9. 11.	6,809,218,653	6,560,445,838	**248,772,815**
2015. 9. 24.	7,356,360,531	7,076,649,865	**279,710,666**
2016. 9. 28.	7,875,580,849	7,540,891,408	**334,689,441**
합계	**28,061,375,249**	**26,950,526,904**	**1,110,848,344**

[표2] 지방교육세 부과처분

(단위: 원)

처분일자	부과처분	정당세액	취소청구세액
2013. 9. 24.	1,193,988,314	1,144,503,181	**49,485,133**
2014. 9. 11.	1,354,757,089	1,305,054,972	**49,702,117**
2015. 9. 24.	1,463,567,247	1,407,679,053	**55,888,194**
2016. 9. 28.	1,547,075,128	1,482,627,999	**64,447,129**
합계	**5,559,387,778**	**5,339,865,205**	**219,522,572**